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8-67호
2018. 8. 31.(금)

차 례

고 시(5)

-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고시 제2018-119호)1
- 대전도시관리계획(상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8-120호)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8-121호)6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고시 제2018-122호)7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미호1호선) 실시계획 고시(고시 제2018-123호)8

공 고(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공고 제2018-667호)11
-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공고 제2018-670호)12
-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공고 제2018-673호)14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공고 제2018-675호)24
- 2018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공시(결산)(공고 제2018-677호)25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8-676호)27

공 람									
--------	--	--	--	--	--	--	--	--	--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고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시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정하기 위하여,
2.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내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

지목별	평균지가 (원/m ²)	지목별	평균지가 (원/m ²)	지목별	평균지가 (원/m ²)
전	168,049	주차장	432,241	유지	143,784
답	220,554	주유소용지	827,092	수도용지	62,262
과수원	222,944	창고용지	507,000	공원	165,605
목장용지	193,900	도로	210,359	체육용지	278,573
임야	40,652	철도용지	218,795	종교용지	567,291
대	716,635	제방	53,592	묘지	104,168
공장용지	428,829	하천	96,426	잡종지	347,823
학교용지	499,616	구거	184,527		

나. 본 고시의 적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대전도시관리계획(상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48-2번지 일원의 상서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54호, 2016. 04. 2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및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270-6242) 및 대덕구청(도시과 ☎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서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기정	-	상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48-2번지 일 원	130,652.0	-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자연녹지지역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일반미관지구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	35~42	주간선 도로	16,015 (949)	신흥대로 1-1	62호 광장	일반 도로	-	건고1903 (65.10.13)	-
기정	대로	3	48	25	보조간선 도로	3,645 (136)	대로 1-2	대로 3-49	일반 도로	-	대고99 (94.06.11)	-
기정	중로	2	116	15	집산 도로	417	대로 1-2	상서 349-75	일반 도로	-	'94.11.18	-
기정	중로	3	211	12~15	집산 도로	1,075 (373)	대로 1-2	중로 2-116	일반 도로	-	-	-

나) 녹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합 계	71,605	-	-	-	-
-	상서1	34,880	-	-	-	-
-	상서2	16,960	-	-	-	-
-	상서3	11,323	-	-	-	-
-	상서4	2,185	-	-	-	-
-	상서5	417	-	-	-	-
-	상서6	5,840	-	-	-	-

※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자연녹지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획지계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개별 필지단위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 맹지형 필지, 파소 필지, 동일소유 필지 등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내 용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지하층 주거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서 허용하는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검사장(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전에 허가받은 자동차정비공장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추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층 이하 ※ 단,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 미관지구에 걸치는 필지의 경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에 따라 2층 이상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 전면가로를 고려하여 배치
형 태		•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경관향상을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 공지에는 대지내 조경 공간으로 확보토록 함 - 대로변 : 3m, 중로변 : 2m

※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행위 중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함

6)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지 표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대지내 조경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함.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변 : 3m, 중로변 : 2m

나)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 계획

구 분	계 획 지 표
차량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출입과 관련하여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 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할 것을 권장함 ● 진·출입 차량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반사경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제고
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모퉀이 및 횡단보도 전후 10미터 이내 구간에는 두지 아니할 것을 권장 ● 개별필지의 주차출입구는 인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를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주차장 설치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와 공동주차장 설치를 권장 (주차출입구 개소 축소와 주차 효율성 제고)
보행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암로(중로 3-211호선) 도로선형개선(보도 확보) 등에 따른 상서지구 내 보행환경 개선 및 향상 ●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의 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험프 설치

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309-8	오정로75번길 54	2018 8 31.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중리동 365-5	중리로75번길 25	2018 8 31.	건물신축	중리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공사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 대덕구청장(공원녹지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나. 공사 내용

- (내용) 2018 사방사업 (인공구조물 설치(사방댐 및 계류보전))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523 일원

다.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신고 일자

- (공사기간) 2018. 4. 10 ~ 2018. 8. 9.
- (준공검사신청일) 2018. 8. 20.

라.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일자

- 2018. 8. 30.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미호1호선) 실시계획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9-3번지선 일원 이촌마을 진입로는 도로폭 협소로 차량 통행 및 농기계 교행 등이 어려운 상태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의 증대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2-미호1호선)
- 사업의 명칭 : 이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15필지 4,972m²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418m, B=10~14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고시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등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본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해당 시설관리청에 무상귀속

8.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도시재생과에 비치).

끝.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 사업명 : 이촌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예정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소계				64,285	4,972						
1	삼정동	25	도로	62	57	대전광역시					
2	삼정동	25-4	도로	25	14	양윤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2(신탄진동)				
3	삼정동	27-1	도로	83	65	대전광역시					
4	삼정동	28-2	도로	25	2	대전광역시					
5	삼정동	30-1	임야	3,931	5	경주이씨 봉정대부공파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08				
6	삼정동	30-3	도로	582	11	이대우	대전 대덕구 미호동 309-3				
7	삼정동	산5-2	임야	3,441	17	진주강씨 연산공자손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315-1				
8	삼정동	산5-3	도로	1,147	125	대전광역시					
9	삼정동	산9-1	임야	16,782	834	경주이씨 봉정대부공파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08				
10	삼정동	산9-3	도로	3,389	1,715	대덕구					
11	삼정동	산10-1	임야	10,101	152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신탄진읍 삼정리 15				
12	삼정동	산10-6	도로	2,934	1,403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신탄진읍 삼정리 15				
13	삼정동	산10-7	임야	6,601	27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신탄진읍 삼정리 15				
14	미호동	산70-6	임야	14,250	293	이충렬	대전시 중구 삼천동 179				
15	미호동	산70-32	도로	932	252	대덕구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폐지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71-4번지 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768호”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폐지	신탄진동 1 71-4	27.62㎡	2.5m	11.048m	노필임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열람

- 기 간 : 2018년 9월 3일 ~ 9월 28일
- 장 소 : 대덕구 민원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8년 9월 3일 ~ 9월 28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대덕구 민원지적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내용	열람지가 원 / m²	의견가격 원 / m²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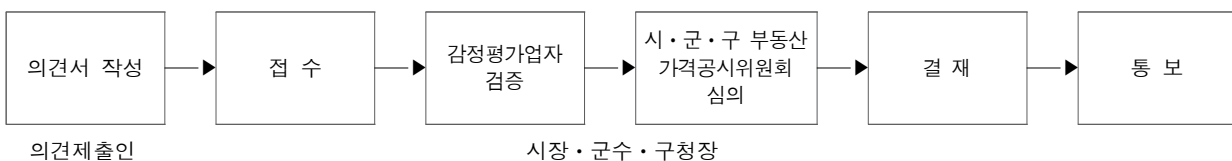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대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입찰참가 대상자는 반드시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황 및 도시계획저촉, 행정상 제한사항 등 관련 공부를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청사 임대점포 대부 입찰공고

나. 대부 대상 공유재산 표시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0-6번지
- 건축물 : 지하1층 지상5층(철근콘크리트/슬래브)
- 대부 임대점포

구분	면적(㎡)	용도	대부기간	예정가격(원)	비고
지하(B101)	52	창고	2018.10.20. ~ 2023.10.19.	61,942,080 (부가세 별도)	건축물 용도변경 불가
1층(101)	359	금융업소			

※ 1년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예정금액으로 대부기간 중 최초 연도 대부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되고, 2차 연도 기간의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산식에 의거 산출·부과됩니다.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 산정 기준>

$$\frac{(\text{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times \text{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대부료})}{\text{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다.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시작 일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비고
2018.08.31.(금) [10:00]	2018.09.05.(수) [16:00]	2018.09.06.(목) [10:00]	대덕구 민원지적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온비드에 등록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입찰 진행시 온비드시스템의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본 입찰은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콜센터1588-532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입찰가격

예정가격 기준으로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은 1년간의 대부료로 자동 결정되며, 대부료 납부는 대부시작일 이전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온비드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는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 시작시간 및 입찰 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동일 물건에 대해서 동일인이 1회에 한해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처리

-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의 10% 이상을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로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며,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가상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임대료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 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 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동일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효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

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시스템상(구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 가. 주민등록등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나.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 부)
 - 다.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라.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제출

11.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사항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대부료 납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대부허가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12. 대부조건 : 붙임 대부 조건 참조

13.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대부대상 재산의 현장 확인을 하여 대상 재산의 여건, 사용허가 조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대부 입찰공고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일 전에 정정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 및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자가 권리의 양도, 양여, 대리운영이 적발되거나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 마. 낙찰자가 대부허가 기간 중에 스스로 대부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간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본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온비드(www.onbid.co.kr), 대덕구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되며, 공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온비드 내용을 따릅니다.
-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1588-532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대덕구 민원지적과(042-608-5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유재산 대부 조건

공유재산 대부조건

제 1 조 (대부용도) 재산의 사용 용도는 입찰공고문의 용도로 한다.

제 2 조 (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입찰공고문의 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 대부금액은 최고낙찰가액으로 하며 낙찰된 금액은 1년간 대부료로 본 구에서 지정하는 은행예금 계좌로 계약 체결시 지정한 기한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 (재해복구회비 납부) 임차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받은 재산의 면적에 대하여 재해복구회비(화재보험)부담액을 매년 3월 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대재산의 보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대재산의 부과금) 임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본 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 용도를 변경하는 것
2. 임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임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임대받은 재산에 시설한 등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 8 조 (임대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구는 임차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임대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임대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배한 때
3. 기타 본 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 9 조 (임대취소시 손해배상) 본 임대조건을 위반으로 임대를 취소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임대취소 요청) 임차인이 임대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임대취소 원서를 본 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자 선정에 드는 비용 및 임대료에 의한 본 구의 재정수입에 대한 손해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제 11조 (사용재산의 반환)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임대취소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구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당해 공유재산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2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은 본 임대조건을 이행할 때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구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조 (임대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시 본 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임차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구와 임차인의 협의 후 본 구의 결정에 의한다.

제 16조 (특수조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자 또는 출자한 대부는 불가하며 임차인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 본 구와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기간만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본 구에게 임대 건물을 반환할 시에는 시설비용 및 권리금 등을 주장하지 못하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특 약 사 항

1. 재해복구회비 / 매년 기준에 의거 부과
2. 본 건물의 전용 임대부분인 벽체, 바닥, 천장수장공사 및 조명기구 부착 등 인테리어공사와 개별 냉난방 설비공사는 임차인이 별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018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교섭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명칭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환경노동조합(위원장 이재복)
- 교섭요구일자 : 2018. 8. 29.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 8. 31. ~ 9. 7.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년 9월 7일 18:00 한)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도달 기준)
- 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위생과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 팩스 (042)608-3835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담당(☎ 042-608-6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공시(결산)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우리 구의 2017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07억원으로, 전년대비 2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2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28천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22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3억원입니다.

- ◆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7년도에 토지, 건물 등 145건 (7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241건(6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26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구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 억원)



◆ 우리 구의 2017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794억원) 보다 41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63억원)보다 58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408억원)보다 314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1억원)보다 11억원 적고, 대덕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천원)보다 6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031억원)과 비교하여 229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은 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 많으며,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 경상경비 절감,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www.daedeok.go.kr/ftp/FTP.do)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 의견수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수아(042-608-6053)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협의회 및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조정하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나. 신고 포상금 등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 2018. 08. 31. ~ 2018. 09. 20.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전화 : 042-608-6813, FAX : 042-608-3834, e-mail : difference8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담당자 이혜선(전화 : 042-608-68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푸른대덕21”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명이내”를 “20명 이내”로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7조(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u>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푸른대덕21 추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u>푸른대덕21</u>의 행동원칙과 실천과제의 추진</p> <p>4. (생략)</p> <p>③ (생략)</p> <p>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u>제17조(협의회의 설치)</u>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u>(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u>----- -----</p> <p>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20명</u>----- -.</p>
<p><u>제20조(신고 포상금 등)</u> ① 구청장은 <u>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u>환경오염 신고범위 및 방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삭제></u></p>

[관 계 법 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